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생활안전과	1

(2012. 11. 27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11월 22일

나. 의안번호 : 12-100

4. 관련근거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」 제73조제2항 및 제74조, 제75조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 제24069호 2012.8.23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(1) 안 제6조에 제11호를 신설하여 「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」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< 검토의견 >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재난심리안정지원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”를 금년 12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통보된 것으로서 상위 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제2항 및 제74조,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추가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·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